

1. 개정이유

예대출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화예대출 산정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 제외(안 제26조 1항 3호 마목에서 거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마목에서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한국은행의 금융증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단,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바.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 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
-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 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 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용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한국환경산

- 업기술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환경정책자금 대출
- 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
- 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
- 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대출
- 거.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무역진흥자금 대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한국은행의 금융증개지원 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단,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바.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

<신 설>

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
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대출

<신 설>

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 대출

<신 설>

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
한 환경정책자금 대출

<신 설>

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대출

<신 설>

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
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

<신 설>

<신 설>

4.·5. (생 략)

② ~ ⑤ (생 략)

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
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
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
급배관건설 대출

거.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
입한 자금을 이용한 무역
진흥자금 대출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